

경상북도 고시 제2014-127호

김천시 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인가 고시

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4월 7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목적

김천시 마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포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어 처리됨에 따라 기존 마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폐지하여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코자 함.

2. 폐지인가 내용

가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－ 사업시행자 : 김천시장

-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(신음동 1284번지)

나. 폐지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및 시설면적 등

시설명	위 치	시설면적 (㎡)	시설용량 (㎥/일)	처리공법	가 동 개시일	연계처리 하수처리시설
마암	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356	271	30	변형회분식 활성슬러지	'05.07.07	아포

다. 폐지사유 :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(하수관거 연결)

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해당없음

마. 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(054-420-6792)에 비치하고 있으니, 이
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